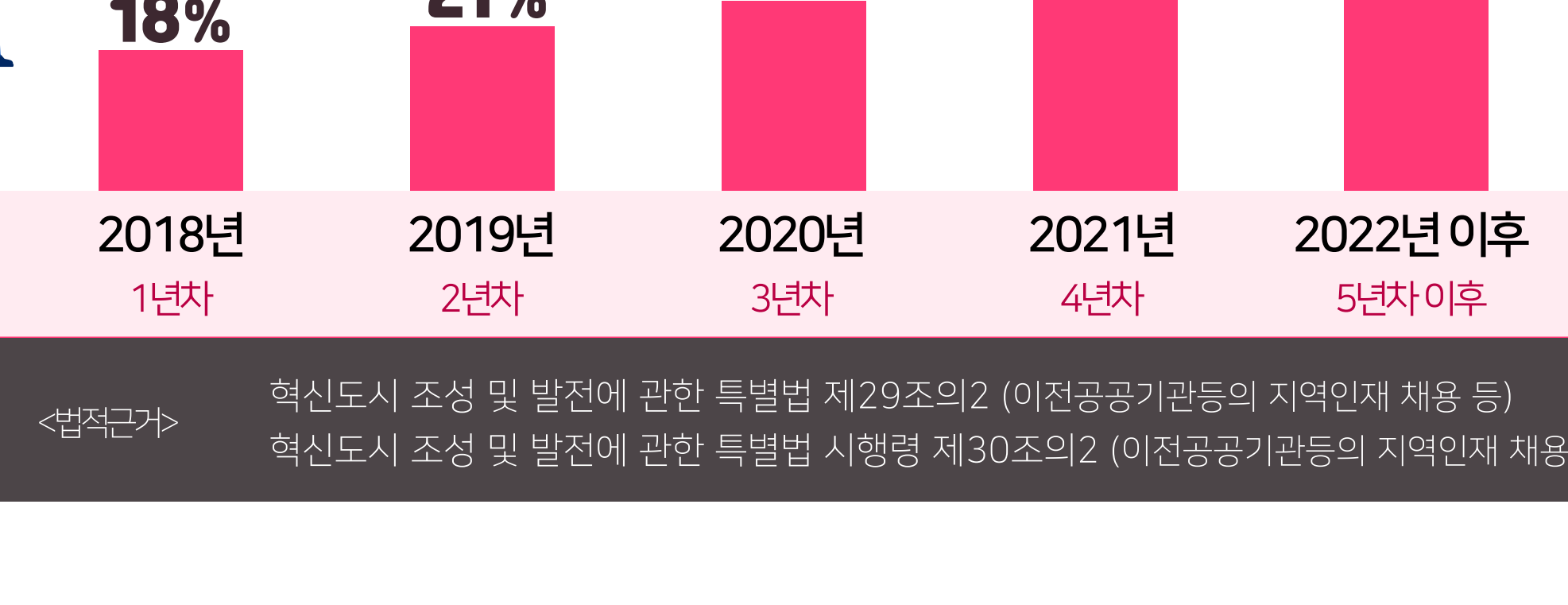


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

1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란?

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(이전지역의 대학·고교 졸업자)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



2 지역인재의 개념

-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

3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

- 목적**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해당 지역 출신 인재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우선 목적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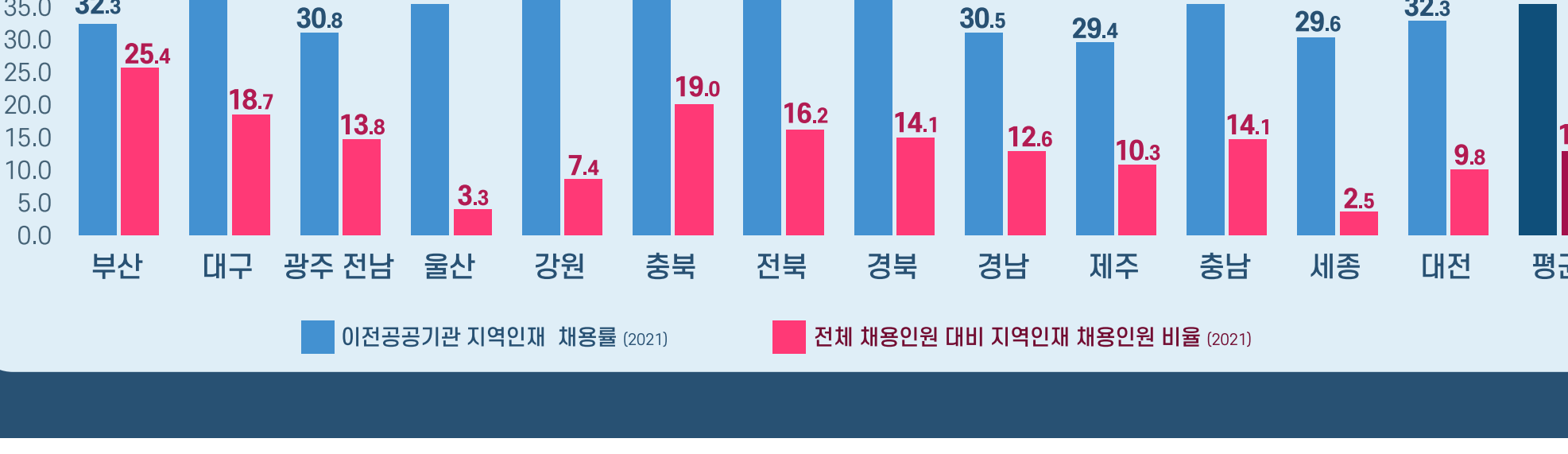
기대효과

- 대학** 지역 공공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우수 인재들을 공적 기관에 취업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임
- 이전 공공기관** 지역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규인력에 대한 투자 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
- 지방 자치단체** 지역 내 정착 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지역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지역 공공인재를 활용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음
- 지역인재**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,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

4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이전공공기관 및 채용 현황 (2021년 기준)

지역	지정기관 수	전체 채용인원	의무채용 대상인원	지역인재 채용인원
부산	12	520	409	132
대구	9	648	317.5	121
광주·전남	13	2,078	932	287
울산	7	1,135	108	38
강원	11	2,074	344	153
충북	11	284	136	54
전북	6	903	399	146
경북	8	886	338	125
경남	10	858	354	108
제주	3	49	17	5
충남	3	249	100	35
세종	21	326	27	8
대전	16	2,777	840	271
총합	130	12,785	4,321	1,483

- 2021년 기준,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시·도 평균 34.7%로 나타남
- 전체 신규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률은 시·도 평균 12.9%로 나타남
-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



5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조항

- 시험 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
-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
-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
- 이전공공기관 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
-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
-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의무채용비율 이하인 경우

6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

- 쟁점 1 지역인재의 범위**
- 공공기관 이전지역 출신의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배제 → 오히려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유입을 저해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
 - 이전지역 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인재 풀(Pool)의 한계 존재 → 지역 내 대학의 수가 적은 지역들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내 특정 대학 출신 편중 심화
- 쟁점 2 예외 조항**
- 예외 조항으로 인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효과 미흡 지적 → 예외 조항 재검토 및 기준 축소 요구
 - 이전공공기관이 채용 분야를 쪼개서 분야별 채용 모집인원을 축소(병역)하는 문제 발생 → 채용모집 인원 하향 조정 필요성 제기
- 쟁점 3 의무채용제도 확대**
-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신규 채용인원 대비 50% 이상까지 늘리고,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자는 요구 존재
 - 이와 동시에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확대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존재

7 향후 나아갈 방향

-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효과와 예외 조항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가 필요함
- 관련 주체(지방자치단체, 대학, 공공기관, 지역인재 등)의 의견을 수렴하고, 협의를 통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과정이 요구됨
- 지방자치단체-대학-공공기관 간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산업·경제 환경에 적합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

#지역인재 #공공기관-지역인재-의무채용제도 #지역발전
#지방자치단체-대학-공공기관-협력체계 #의무채용 예외 조항

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원의 2022년 정책과제인 “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”를 참고 바랍니다.

[자료출처]

윤소연, (2022)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[내용문의]

윤소연 (한국지방행정연구원, 부연구위원, 033-769-9848, syoon@krla.re.kr)